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1가합292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운수, 한남규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스트 담당변호사 한세라아름(HAN SARAH ALM)

변론 종결 2023. 5. 24.

판결 선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7341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2016. 9. 2. 보증기한 2016. 9. 2.부터 2016. 11. 30.까지, 보증금액 2억 9,58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2017. 2. 1. 보증기한 2017. 2. 2.부터 2018. 2. 1.까지, 보증금액 2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B은 2017. 3.경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7. 5. 12.경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및 이자 합계 298,547,583원을, 2017. 6. 26.경 D은행에게 213,054,4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9870호로 B 및 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09,928,105원 및 이 중 296,852,31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213,054,430원에 대하여는 2017. 6. 26.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9. 10. 21. 피고가 2019. 11. 30.까지 쌀(백미)

20,000포를 E에게 공급하고, 물품대금 8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10% 상당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은 80,000,000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쌀(백미)을 전부 공급하였고 E은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2) 피고는 2019. 11. 13. E과 2020. 3. 31.까지 E에게 벼(일품) 30,000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1,87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고자 전체 물품대금의 5%인 93,750,000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은 위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E에게 4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먼저 공급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B이 보유한 C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근저당권자 B, 채무자 C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 7. 5. 접수 제35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와 B은 2019. 12. 10.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확정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 B은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31. C에게 채권양도 통지 등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9. 12. 30. 접수 제73410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피고와 E은 2020. 1. 22. 피고가 2020. 3. 31.까지 참깨 200,000kg을 E에게 공급하고, 물품대금 8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의 강제집행 진행

1) E은 2020. 3.경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6. 22. E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80,000,000원을 청구하여 물품대금 채권 일부를 변제 받았고, 2020. 9. 11.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채66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2) 피고는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받고자 2021.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 1. 25.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1)은 2021. 3. 5. 피고 측에 연락하여 임의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와 H은 2021. 3. 5. H이 C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21. 10. 29.까지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액 169,850,013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한 뒤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H이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7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B에게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변제 받은 100,000,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 509,928,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채무초과 여부

1) 적극재산 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12. 10.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	500,000,000
2	용인시 처인구 I	947,095,000
3	용인시 처인구 J	
합계	1,447,095,000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2019년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매출채권 239,543,000원, 재고자산 202,170,000원 등이 존재하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B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유동자산의 경우 표준대차대조표 기재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가치가 기재와 같은 평가액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자산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3).

2) 소극재산 갑 제7,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4).

1	원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534,799,5995) 구상권잔액 384,899,010원 + 2019. 12. 10. 기준 미수손해금 149,900,589원(갑 7호증 참조)
2	농업회사법인 K(주)	물품대금	502,101,668
3	D은행	대출금 등	75,250,268
4	L은행	대출금 등	89,539,119
5	IBK기업은행	대출금 등	66,055,4036) 4,381,903원+9,618,000원+885,000원+14,975,400원+12,017,250원+10,211,250원 +13,966,600원(갑 제12호증 참조)
6	M조합	대출금 등	300,000,000
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액	1,888,560

1	원고	신용보증약 정에 따른 구상금	534,799,5995) 구상권잔액 384,899,010원 + 2019. 12. 10. 기준 미수손해금 149,900,589원(갑 7호증 참조)
8	조세채무	종합부동산 세	4,641,980
9	조세채무	재산세	5,103,290
합 계	1,579,379,88 7		

3) 소결론 따라서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재산이 5억 원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은 명백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준 점, ② B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은 당시 B이 보유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그 이외 B이 E을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의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7), 이로 인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8).

가)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데 수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E에게 44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거래로 먼저 공급하여 주는 대신에 위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1차, 2차, 3차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는

3,489,000,000원(814,000,000원 + 1,875,000,000원 + 800,000,000원)이며, 위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총 보험가입금액은 173,730,000원(이 사건 1차, 3차 계약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 이 사건 2차 계약에 관한 보험가입금액 93,750,000원)으로 이는 총 물품대금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며, 피고는 E에게 446,0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외상거래를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 담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E이 B이 보유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E에게 B와의 관계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과 E은 두 회사가 N의 가족소유 회사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날인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과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이사록(을 제10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B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한 적이 없어, B의 신용상태,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바)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와 E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쌀(백미)을 전부 공급하였고 E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사) E은 2020. 3.경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6. 22. E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F 주식회사에 보험금 80,000,000원을 청구하여 물품대금 채권 일부를 변제 받았고, 2020. 9. 11.경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채669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다.

아) 피고는 2021.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이 2021. 3. 5. 피고 측에 연락하여 임의경매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와 H은 2021. 3. 5. H이 C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21. 10. 29.까지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액 169,850,013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합의한 뒤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H이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피고 회사에서 E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O은 피고 회사 입사 이전에 B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O이 B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O은 E의 물품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민상

판사양해인

판사정요진

별지

- 1) H은 C의 부(父)이다.
- 2) 피고는 원고의 가처분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1억 원 외의 돈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상법 규정에 관한 판사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 4)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165,597,18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E(또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뿐이므로 이를 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구상권잔액 384,899,010원 + 2019. 12. 10. 기준 미수손해금 149,900,589원(갑 7호증 참조)
- 6) 4,381,903원+9,618,000원+885,000원+14,975,400원+12,017,250원+10,211,250원 +13,966,600원(갑 제12호증 참조)
- 7)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은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E과 B이 보증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서 그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